

대전지방법원 2024. 12. 10 선고 2024가단237358 판결 [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금

담당변호사 김유돈, 김원규, 김건우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강철호

피고B

변론 종결2024. 11. 12.

판결 선고2024. 12. 10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고,
나. 158,243,602원과 이에 대하여 2024. 10. 6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
돈과, 2024. 7. 1.부터 위 가.항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9,6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
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판사권세진

별지